

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20. 3. 16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원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 9. 6.)

제2조 (조직과 기능) ① 센터에는 본 대학교의 원격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, 교수-학습지원에 관련된 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원격콘텐츠제작지원부, 시스템관리운영부를 둔다.(개정 2022. 9. 6.)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22. 9. 6.)

1.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, 예·결산 보고
2. 원격수업 및 교수-학습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, 제작 지원 및 품질 관리
3. 원격수업 및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지원
4. MOOC시스템, 학생역량관리시스템(CanDo시스템) 관리
5. 센터 운영에 관한 통계분석, 기록물, 센터 홈페이지 관리
6. 교수자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및 강의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
7. 센터 소관 위원회 운영
8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9.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.

제3조 (원격교육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원격교육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0. 9. 8., 2021. 3. 1., 2022. 9. 6.)

1.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2. 교무처, 기획처, 인재개발처, 전산정보원의 책임급 실무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1인의 간사를 둔다.
3.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1회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4. 위원회 활동사항은 교육혁신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22. 9. 6.)

1. <삭제 2022. 9. 6.>
2. 원격수업 및 교수-학습지원 콘텐츠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
3. 센터 사업의 계획, 운영 성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부 칙(2020. 3. 16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관련규정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교육매체제작실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9. 6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